

싸우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국회개혁을 위한 집중토론회

－ 「민본21」 국회개혁 방안(안) －

■ 일시 : 2009년 4월 8일(수) 오전 8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1호

목 차

I. 문제제기	2
II. 국회개혁의 목표와 과제	4
III. 국회개혁과제별 세부 방안	
1. 늘 일하는 국회	
(1) 상시국회제 도입과 캘린더식 국회운영 제도화	6
(2) 상시국감제 도입 및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	7
2.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	
(1) 법안자동상정제 및 법안조정절차제 도입	9
(2) 필리버스터 허용 및 표결처리 보장	11
(3)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국회내 법제실로 이관	12
(4)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운영	13
3. 파행·싸움없이 일하는 국회	
(1)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 및 권한 제한	16
(2) 원구성절차에 관한 제도화 및 의장의 권한 강화	17
(3) 의사당내의 질서유지권 강화	18
(4) 본회의의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19
4. 국민과 함께 일하는 국회	
(1) 국회윤리특위 기능의 실질화	20
(2) 의원윤리정보공개제 도입	21
(3) 의원 입법발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의원입법예고제 도입	21
IV. 국회개혁을 위한 핵심 병행과제	
1. 국회와 행정부(대통령)와의 관계 재정립	22
2. 정당의 강제적 당론 금지 및 민주적 공천제 실천	23
3. 지역주의 정당 체제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24
〈별첨1〉 법안 진행흐름도	25
〈별첨2〉 최초의 원구성 방법	26

1. 현 국회의 상황과 문제점

(1) 국회의 권한과 역할의 증대 불구, 국회운영은 대단히 느슨하고 비효율적

- 상시국회 표방 불구, 저조한 본회의 개최 일수
 - 15대 54일, 16대 53일, 17대 45일, 18대 19일(2009.3.31현재)
 - 실제 본회의 진행시간 보다 대기시간이 더 많은 국회
- 법안 발의 건수의 비약적 증대, 처리율은 저조
 - 발의 건수 : 15대 2,614건, 16대 3,254건, 17대 8,592건, 18대 4,369건
 - 법안 처리율 : 16대 70%, 17대 58%, 18대 33.1%
- 정기회말 하루만에 무더기 안건처리
 - 15대 82건, 16대 42건, 17대 97건, 18대 58건(1월 임시회)

(2) 파행, 날치기, 몸싸움 등 극한 대결과 투쟁의 정치 심화

- 개원 국회부터 장기 파행(국회법 위반)
 - 15대 39일, 16대 3일, 17대 30일, 18대 83일
- 사회적 갈등과 문제의 조정 해결자가 아니라 갈등의 진원지化
- 18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象 노정 - 국가신인도에 심각한 악영향

- 일은 하지 않고, 싸움만하는 국회라는 오명
-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상실 및 심각한 권위 실추
- 국회 무용론,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적 현상 심화

2. 원 인

(1) 국회의원 개인의 자질 문제

- 개개인의 자질과 성실성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
 - 입법 발의 건수의 비약적 증대,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등
-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자로서 스스로의 자율성과 권위를 지키려는 노력은 부족

(2) 정치 구조와 문화의 문제

-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국정운영의 미약
 - 대통령과 행정부의 국회 경시, 여당을 통한 국회지배 관행 온존
- 국회가 정권쟁취를 위한 정당의 정략적 도구화
 - 여당은 정부 편들기, 야당은 반대와 비판에만 익숙
 - 사실상 강제적 당론과 공천권을 통한 정당의 국회 지배
- 의회를 의회답게 유지하는 전통과 정치문화의 미성숙
 - 소수견해존중, 대화와 타협, 다수결의 원리 모두 부족
 - 의장의 권위와 역할에 대한 전통 미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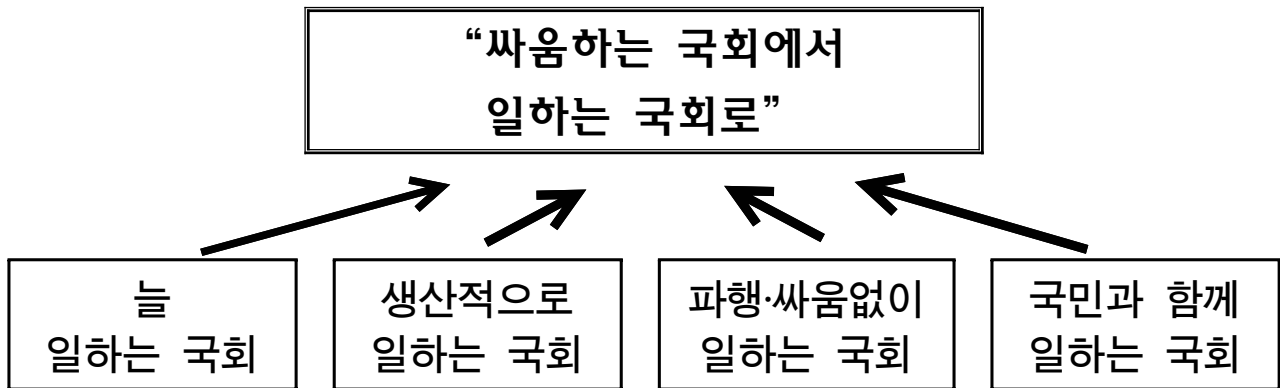
(3) 국회운영제도의 문제

- 사실상 정당대표(교섭단체 대표)간 합의에 의한 국회 운영
 - 정당에 의한 국회지배와 대결·투쟁의 국회 유지 온존
 - 예측불가능한 일정 : 잦은 일정 변경, 무작정 대기
- 상임위 중심이 아니라 본회의 중심의 국회 운영
 -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전문성 발현 기회 제한
-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미흡한 제도
 - 수박겉핥기식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 국회의원의 책임성 및 윤리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약
 - 의정 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평가 미약
 - 선언적인 윤리실천규범 및 윤리특위 기능의 형식화

Ⅱ

국회개혁의 목표와 과제

1. 개혁의 목표



2. 개혁 방향별 핵심 과제

(1) 늘 일하는 국회

- 상시국회제 도입과 캘린더식 국회운영 제도화
- 상시국감제 도입 및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

(2)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

- 법안자동상정제 및 법안조정절차제 도입
- 필리버스터 허용 및 표결처리 보장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국회내 법제실로 이관
-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운영

(3) 파행·싸움없이 일하는 국회

- 국회의장의 중립성 확보 및 직권상정 권한 제한
- 원구성에 관한 제도화 및 의장의 권한 강화
- 의사당내의 질서유지권 강화
- 본회의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4) 국민과 함께 일하는 국회

- 국회윤리특위 기능의 실질화
- 「의원윤리정보공개제」 도입
- 의원 입법발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의원입법예고제 도입

Ⅲ

개혁과제별 세부 방안

1. 늘 일하는 국회

(1) 상시국회제 도입과 캘린더식 국회운영 제도화

①

■ 현 제도

- 본회의 관련 국회운영기본일정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

■ 개선안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가 포함된 전체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작성하도록 변경
- 국회운영기본일정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상임위원회 일정은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송부한 후, 본회의 일정과 겹칠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함

■ 관계법

- 「국회법」 5조의2(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등)

②

■ 현 제도

-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 제외한다) 1일에 임시회 집회
(사실상 2·4·6월 3개월 임시회 개최)

■ 개선안

- 1월과 8월을 제외한 모든 월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
(사실상 2·3·4·5·6·7월 6개월 임시회 개최)

■ 관계법

- 「국회법」 5조의2(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등)

③

■ 현 제도

- 임시회는 매월 1일 오후 2시에 개최, 나머지 일정은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하여 결정

■ 개선안

- 임시회는 매월1일 오후2시에 개최하도록 하고, 본회의의 개의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후2시로 정례화. 단, 대정부질문 및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월의 일정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별도 협의하여 정함

■ 관계법

- 「국회법」 5조의2(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등), 「국회법」 72조(개의)

(2) 상시국감제 도입 및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

가. 상시국감제

①

■ 현 제도

- 국정감사일을 매년 9월10일부터 20일 간으로 일원화

■ 개선안

- 국정감사 총 일수를 20일 이내에서 25일 이내로 연장하고 상임위원회별로 기간과 일정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변경

■ 관계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조(감사)

※ 국정감사결과를 예산심의에 반영하고, 정기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정기회(9월1일)전까지 종료하도록 함

나. 예결위의 상임위원회 전환

①

■ 현 제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운영

■ 개선안

- 예산결산위원회(상임위원회) 로 전환
- 예결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관계법

- 「국회법」 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② 가

■ 현 제도

-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매년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

■ 개선안

- 매년 4월 30일 까지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변경

■ 관계법

- 「국가재정법」 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 「국회법」 84조의4(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편성지침의 제출요구)

2.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

(1) 법안자동상정제 및 법안조정절차제 도입 <p.25 별첨 자료 참조>

□ 필요성

- 현행 제도하에서는 발의된 법안이 경과기간을 지난 후, 상임위에 상정되려면, 사실상 교섭단체 간사위원간 합의가 필요하고, 상임위를 거친후에도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교섭단체 대표의원간의 합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상정을 둘러싼 국회 파행이 빈번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상에 대한 개선 요구가 담긴 법안이 방치되는 등 국회 본연의 책무인 입법 기능이 제약을 받고 있음
-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의 내용이 본회의 상정 등의 과정에서 교섭단체대표의원간 합의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상임위의 권능과 역할이 무력화되는 경우도 빈발함.
-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리, 그리고 소수견해 존중의 취지를 살려 국회 파행의 근원을 제거하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며, 법안자동상정제와 법안조정절차제를 대안으로 제시함.

□ 관계법

- 「국회법」 조문 신설, 「국회법」 35조(위원회의 종류)
- 「국회법」 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 법안자동상정제도와 법안조정절차제의 기본 골격

①

- 법안이 발의되어 경과기간(제정 20일, 개정 15일)이 지나면 발의 순서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 자동상정되어 상임위 전체회의의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②

(90)

-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최초에 상정된 날로부터 최장90일 이내에 의결

③

-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해당 법안에 대한 법안조정절차를 시행
- 법안조정절차는 여·야 고위정치협상체 성격의 <법안조정위원회>에서 최장 60일간 논의하도록 함.
- 법안조정위원회를 거친 조정안(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원안)은 해당 상임위 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이관하여 논의 후 의결함.

④ 10

-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 의결전 국회내 법제실에서 체계·자구에 대한 의견을 들음. 이 기간은 10일 이내로 함.

⑤ (180)

- 발의된 법안은 해당상임위원회에서 경과기간과 자구심사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80일 내에 의결하여야 함

⑥ (60)

-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은 회부된 날부터 최장 6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함

⑦

- 위의 처리기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의결(상임위 처리기한 변경)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본 회의 처리기한변경)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참고1) 법안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i)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쟁점법안을 논의하는 원내교섭단체간 고위정치협상체ii)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하여 구성하고, 쟁점법안 해당 상임위 교섭단체 간사는 당연직 위원iii) 최장 60일간 논의하며, 합의제로 운영iv) 조정기간이 완료되면, 조정안 혹은 원안을 해당 상임위 또는 법안심사소위로 이관 |
|---|

(2) 필리버스터 허용 및 표결처리 보장

□ 필요성

- 법안의 자동상정과 단계별 처리시한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다수당에 의해 일사천리로 부실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하고, 소수당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질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충분한 토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토론없는 몸싸움과 일방처리 대신 토론있는 표결처리 방식으로 전환

□ 관계법 : 「국회법」 조항 신설

□ 필리버스터 허용의 기본 골격

①

- 법률안에 대한 의결 전,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1/4이상의 서면요청으로 발언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찬반토론을 보장함. 단, 총 발언시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발언자 수에 따라 1회 발언 시간은 제한을 두도록 함.

②

- 재적의원 3/5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토론을 종결하고 즉시 표결처리함
- 필리버스터제에 의한 토론은 법률안의 처리기한(상임위 180일, 본회의 60일)을 초과하여 진행할 수 없음.

(3)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국회내 법제실로 이관

■ 현 제도

-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되므로 법사위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 전체 의사일정이 마비가 되고 있음

■ 개선안

- 국회내 법제실을 보강하여 법안의 체계·자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관계법

- 「국회법」 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58조(위원회의 심사), 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

-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폐지함

②

-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사무처내 법제실 이관

③

- 체계·자구에 대한 의견제출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법제실은 사무처법 규칙으로 그 직제를 보강하도록 함

(4)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운영

① ⇒ 가

■ 현 제도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제도는 본회의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음

■ 개선안

- 상임위원회 의결로도 '국정감사 및 조사'와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에 관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함

■ 관계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조사), 9조(조사위원회활동기한), 15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국회법」 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등

②

■ 현 제도

- 규정없음

■ 개선안

-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 관계법

- 「국회법」 127조의3(감사원의 감사결과 제출) 신설

③ .

■ 현 제도

- 상임위원의 사·보임 금지기한 30일

■ 개선안

- 사·보임 금지기한 6개월로 연장.(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금지기한내 사·보임 가능)

■ 관계법

- 「국회법」 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④

■ 현 제도

- 상설소위원회 구성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안 개별 건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불합리성 상존

■ 개선안

- 상임위별 3~4개의 상설소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 함.(2개 겸임가능)

■ 관계법

- 「국회법」 57조(소위원회), 58조(위원회의 심사)

⑤

■ 현 제도

- 본회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으로 요구

■ 개선안

-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외부전문가를 특별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
- 개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제출토록 의무화 함.

■ 관계법

- 「국회법」 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128조(보고·서류제출요구)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⑥

■ 현 제도

- 현 「국회법」은 일본식 공청회제도와 미국식 청문회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있으나, 차이점이 불분명하고,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안에 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일부 개최되고 있을 뿐, 입법 또는 조사들을 위한 청문회는 개최되지 않고 있음

■ 개선안

- 공청회 제도를 폐지하고, 청문회로 통합 운영
 - i)입법청문회 : 입법·법안심사를 위한 청문회(전문가 등 진술인, 증인 등)
 - ii)정책청문회 : 법안 이외의 기타 안건 심사 청문회(전문가 등 진술인, 증인 등)
 - iii)감사·조사청문회 :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청문회(증인 등 출석)

■ 관계법

- 「국회법」 58조(위원회의 심사)

※ 인사청문회는 현행 인사특별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행 유지함

3. 파행·싸움없이 일하는 국회

(1)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 및 권한 제한

■ 현 제도

-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적 이탈을 하고 있으나 여야 모두에게 있어서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으로 인해 직권상정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빈발함.

■ 개선안

-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중립적 국회 수장으로서의 국회의장의 신분을 보다 분명히 함.

■ 관계법

- 「국회법」 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국회법」 85조(심사기간), 「국회법」 86조(체계·자구의 심사), 관행

① 4

- 국회의장의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함.

②

- 법적으로 제한하기에는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15대 국회 이후에 관행화된 의장의 불출마를 정착화시켜야 됨

③

- 법안자동상정제 시행 및 표결처리기일제를 통한 처리기한 보장함에 따라 법안에 대한 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을 폐지하는 대신에, 예산안 등과 관련된 직권상정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함

(2) 원구성절차에 관한 제도화 및 의장의 권한 강화 <p.26 별첨자료 참조>

■ 현 제도

-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교섭단체간의 미합의로 인해 원구성이 되지 않아 국회가 82일간 파행되고, 입법부의 수장인 의장선출이 법에 규정된 날짜보다 1개월 이상 늦어짐

■ 개선안

- 원구성에 관한 제도화 및 의장의 권한 강화

■ 관계법

- 「국회법」 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국회법」 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국회법」 41조(상임위원장), 「국회법」 41조(상임위원장), 「국회법」 3조(의석배정)

①

-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총선거후 최초 집회일(6월5일)에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일수만큼 국회의원의 세비를 감액함.

②

-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총선거후 임기개시일(5월30일)로부터 15일(6월13일) 이내에 상임위원 선임을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요청없으면, 의장이 선임하도록 함. 이 경우, 의원등록시 제출한 '희망 상임위원회 요청서'를 참고

③

- 상임위원장의 배분은 우선 교섭단체별 의원 정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의 수를 배분하고,
- 교섭단체별 상임위원장을 맡을 상임위원회의 배정은 교섭단체대표의원간 협상에 따르되 상임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5일 이내(최대 6월 18일)에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다수당부터 배분된 상임위원장 수만큼의 상임위원회를 선정

④

()

- 상임위원장 배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최종 선출함

⑤

- 의석은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안될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회별로 정하도록 함

(3) 의사당내의 질서유지권 강화

①

■ 현 제도

- 의장은 회의장 내 질서문란 행위에 대하여 해당 의원에 대하여 발언금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음

■ 개선안

- 의장은 회의진행을 계속 방해할 경우, 2차례의 구두경고에 불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직권으로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를 가능하도록 함

■ 관계법

- 「국회법」 145조(회의의 질서유지)

※ 의장의 출석정지 징계에 대하여 징계의원은 윤리특위에 이의제기 가능

②

■ 현 제도

- 공무원법상 임명권자의 직권면직 대상에 국회 내 소란행위 관련 사항없음

■ 개선안

- 국회 질서문란행위에 보좌진 및 국회 당직자가 참여 또는 동원한 경우,
 - i)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위에 제소할 할 수 있으며,
 - ii)보좌진 및 국회직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의장)가 직권면직하도록 함

■ 관계법

- 「국가공무원법」 70조(직권 면직), 「국회법」 145조(회의의 질서유지)

※ 「정당법」 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에 의사당내 소란행위에 참여하거나 동원된 당직자에 대해서는 당원자격을 박탈하고, 유급사무원으로 임명을 못하도록 함

(4) 본회의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 현 제도

- 정기회 및 임시회 본 회의에서 매년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횟수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대정부질문제도가 정치공세와 정쟁의 장으로 변질

■ 개선안

- 본 회의 대정부질문은 축소하는 대신 긴급현안질문을 활성화

■ 관계법

- 「국회법」 122조2(정부에 대한 질문), 「국회법」 122조3(긴급현안질문)

①

- 정기회는 회기중 5일 이내, 임시회는 연간 1회에 한해 회기중 5일 이내에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한 분야를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도록 축소

②

- 대정부질문을 하지 않는 임시회에서 긴급현안질문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재 120분 이내로 되어 있는 시간을 360분 이내로 연장하고,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연장 가능하도록 함.
- 의원별 질문시간은 의장이 교섭단체별 의원수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교섭단체별 총 질문시간 내에서 개별의원의 질문 시간을 조절하여 상용할 수 있게함.

4. 국민과 함께 일하는 국회

(1) 국회윤리특위 기능의 실질화

■ 현 제도

- 17대의 경우, 윤리특위에 제소된 건수 82건이었으나, 실제 징계건수는 0임.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동료의원이 하고 있으며, 징계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이중적 구조임

■ 개선안

- 심사와 징계의 단일화, 윤리심사 요구 요건 강화, 윤리심사자문위구성의 의무화와 실질적 역할

■ 관계법

- 「국회법」 162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의 의결), 「국회법」 156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국회법」 46조(윤리특별위원회), 「국회법」 155조(윤리심사 및 징계), 163조(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

- 윤리특위에서는 ‘윤리심사대상의원’ 또는 ‘징계대상의원’에 대해 제명을 제외한 징계를 의결

②

-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하는 의원을 [20인 →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완화함

③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사항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함.
-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는 것을 국회법에 신설함.

④

-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양형에 대한 종류를 90일 출석정지로 확대하고, 수당에 대한 감액역시 출석정지 일수에 비례하여 감액하도록 함

(2) 『의원윤리정보공개제』 도입

■ 현 제도

-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공적기관과 공간의 부재

■ 개선안

- 개별의원의 윤리위 제소 건수 및 징계 내용을 국회보와 국회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재함.

■ 관계법

- 「국회법」 10조(의장의 직무)

(3) 의원 입법발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의원입법예고제 도입

■ 현 제도

- 위원회가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

■ 개선안

- 법률안을 발의하려는 국회의원은 국회공보와 국회홈페이지에 10일 이상 발의하려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후, 의원10인의 찬성으로 발의하도록 함

■ 관계법

- 「국회법」 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1. 국회와 행정부(대통령)와의 관계 재정립

(1)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정에 대한 국회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을 강화하고, 그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대통령은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도부, 특히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국정운영의 기본틀로 삼아야 하며,
- 국회와 행정부간의 상시 의사소통 채널로서 과거 정무장관의 역할을 하는 특임장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2) 이제 국회도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에 입각한 입법부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함

- 여야의 정쟁 구도로 몰고 가는 구시대적 국회운영에서 탈피하여, 국회의원의 자율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각 정당은 관련 당헌·당규 개정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 국회의원 스스로도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성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실천적 노력을 배가해야 함

2. 정당의 강제적 당론 금지 및 민주적 공천제 실천

- (1) 현 국회의 비효율성과 파행의 근원은 하향식 공천제와 강제적 당론에 의해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제약되고, 정당에 의해 국회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바, 국회 개혁을 위해서는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국회의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함
- (2)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당이 강제적 당론을 정하여 국회의원에게 강요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함
 - 정당의 당론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권고적이어야 하며, 정당은 국회의원의 자유투표행위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 현재 국회법에 명시된 자유투표권한을 정당법에도 명시하여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이 권한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해야 함
- (3)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는 전혀 무관하게 정당지도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재의 공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국회개혁의 선결과제임
 - 밀실공천, 계파 공천 등 기존의 하향식공천이 지속되는 한 국회의원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국회의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움.
 - 하향식공천제를 대체하는 상향식 공천제도를 각 정당이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공천과정을 선관위가 위탁 관리하는 방안 등 공천제도의 실천적 개혁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 정당의 공천에서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공천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3. 지역주의 정당 체제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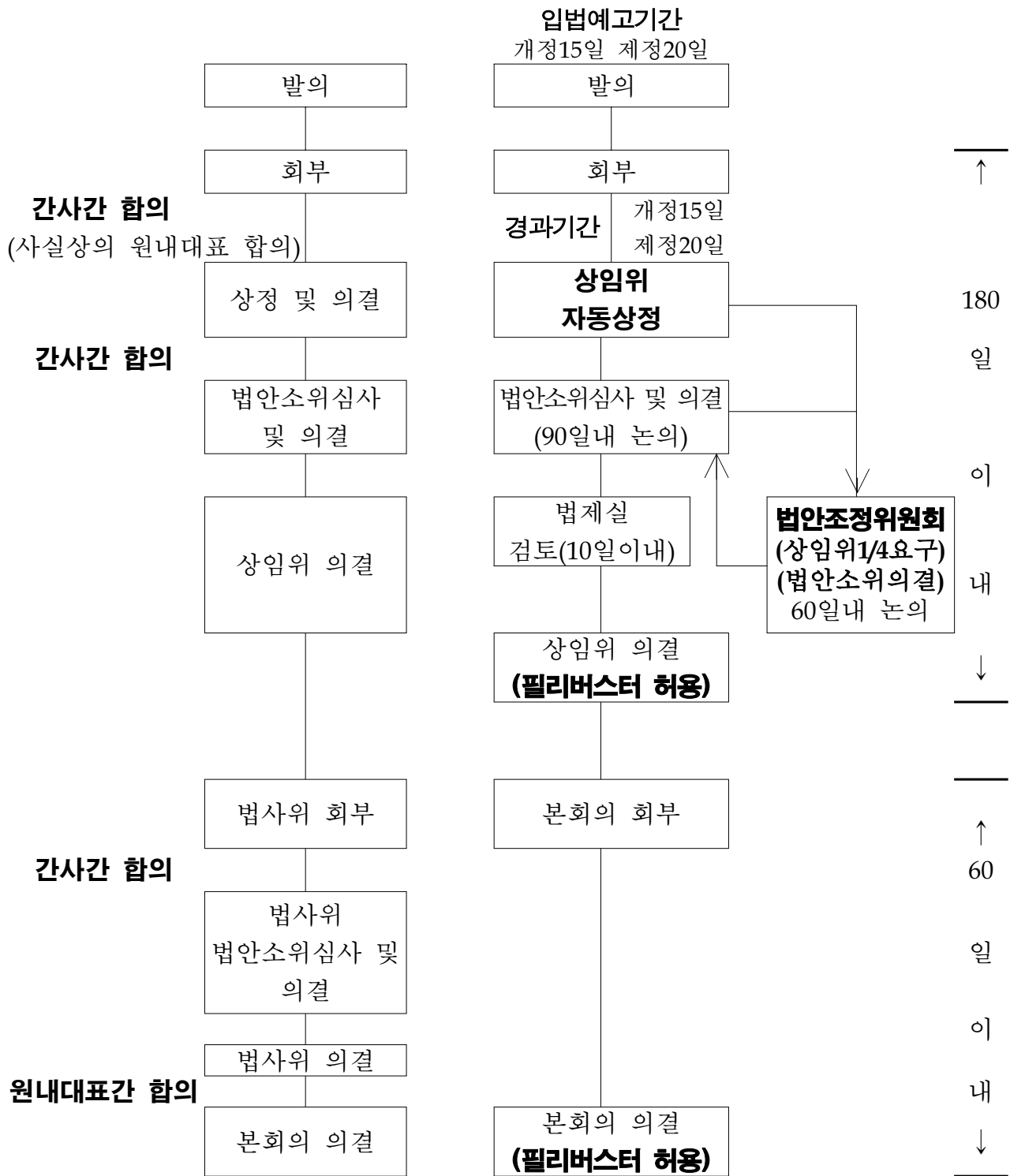
(1) 현 국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점중의 하나는 정당별 국회의원의 구성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임

- 이는 국민의 이익대변체계의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회 파행의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정당별 국회의원구성의 지역적 편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함

-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별첨1 : 법안 진행흐름도



〈교섭단체대표 및 상임위 간사 합의제〉 ⇒ 〈법안자동상정 및 법안조정절차 도입 후〉

◇ 별첨2 : 최초의 원구성 방법 - 의장단 선출 · 상임위원선임 · 상임위원장단 선출

구 분	방 법	선출 및 선임일
의장단 선출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과반득표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임사회(6월5일)에서 선거 - 최초임사회는 임기개시후 7일
상임위원 선임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선임함	의원 임기개시일(5월30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임위원장 배분	교섭단체대표의원간 협의가 안될 경우, 다수당부터 즉시 선정함	상임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회 호선을 거쳐, 본회의에서 선출 -재적의원 과반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	상임위원장 배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호선 후, 첫 번째 본회의에서 선출